

성남시 봉국사의 역사와 大光明殿 主尊佛에 관한 고찰

김엘리*

〈차 례〉

1. 머리말
2. 주변 사찰, 법륜사와 망경암
3. 역사와 기능 변천
4.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성남시의 전통 사찰인 봉국사의 역사를 살폈으며, 법전인 대광명전의 주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봉국사는 조선 현종대 창건되어 1939년에 경성부 소재 사찰로 법통이 이전되었지만, 봉국사 대광명전이 현지에 보존되어 사찰의 명맥을 이어나갔고, 해방 후에 봉국사는 제 이름을 되찾았다. 봉국사의 역사와 기능 변천을 고찰하면서 조선왕실의 불교문화와 대한제국기 종교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봉국사가 일제강점기에 김교상이 결성한 대한독립단의 독립운동 기지로 활용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을 추적하면서 봉국사 창건시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봉안되었고, 나한전에 석가불이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봉국사의 두 불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939년 봉국사가 이전한 후 봉국사 대광명전에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사찰의 폐할·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실되고 흔재된 문화재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었다.

[주제어] 봉국사, 봉국사 대광명전,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김교상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강의전담교수

1. 머리말

성남시 奉國寺는 조선시대 顯宗의 공주들이자 肅宗의 누이들이인 明善·明惠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왕실 사찰이었으며, 현재 성남시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이다. 봉국사의 大光明殿은 1980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대광명전의 主尊佛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후불탱화인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역시 2016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봉국사는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조선 후기 불교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유의미한 사찰이다. 그러나 종래의 봉국사 연구는 왕실과의 연계성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창건 배경만 주목하고 있다.¹⁾ 이에 봉국사의 역사와 문화재의 연원을 좀 더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대광명전의 건물 명칭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主佛인 점은 연구의 필요성을 더한다. 대광명전의 주존불은 통상적으로 비로자나불이어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봉국사 대광명전에 아미타불의 봉안은 요절한 명선·명혜공주의 극락왕생을 위함이었다는 현재 사찰 측의 설명도²⁾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奉恩寺의 말사로서 작성된 봉국사의 재산 목록 즉, 『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에 따르면, 봉국사의 불상은 비로자나불과 석가불 2위가 등록되어 있고,³⁾ 아미타불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분명 봉국사에는 대광명전의 주불로 적합한 비로자나불이 안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현재 봉국사의 대광명전 주존불은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이 대신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본고는 봉국사 주변 사찰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봉국사 인근에 지금은 사라진 사찰 法輪寺가 있었다. 법륜사 역시 봉은사의 말사로서 사찰령 개정에 따라 사찰 재산을 조사하였는데, 법륜사의 불상으로 아미

1) 김엘리, 「19세기 말 고종대 이규승의 망경암 중수에 관한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역사문화학회, 2017; 윤종준, 「明善·明惠公主에 대한 고찰」, 『城南文化研究』 17, 2010.

2) 성남시 봉국사 홈페이지(http://www.bongguksa.or.kr/bbs/content.php?co_id=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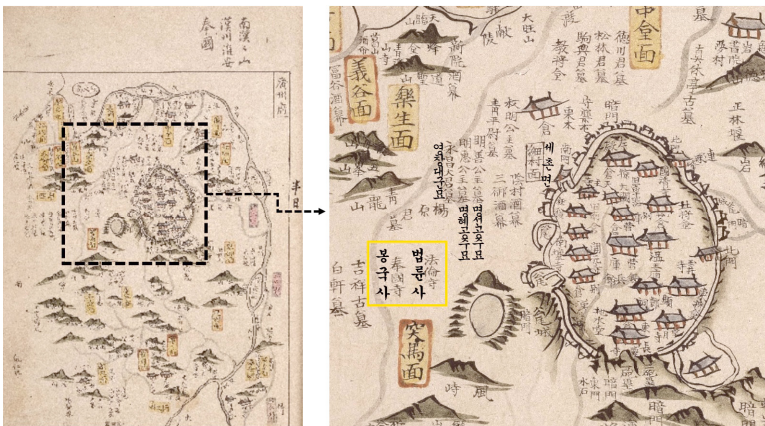
3) 『寺刹令改正ニ依ル奉恩寺財産目録』, 「貴重品 奉國寺」

타불 1위가 확인된다.⁴⁾ 이에 법륜사의 아미타불이 봉국사로 이안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봉국사의 주존불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봉국사 인근 사찰인 법륜사, 망경암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봉국사의 역사와 기능 변천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에 대한 고찰 및 그 所在를 추적해 보겠다. 아울러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의 연원을 추정하고,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겠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따른 불교 사찰의 병합·이전, 폐사되는 과정에서 유실·혼잡해진 성남시 불교 문화재의 연원을 밝히고, 문화재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 주변 사찰, 법륜사와 망경암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을 추적하고, 현재 주존불인 아미타불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 봉국사 주변에 인접한 사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 시기는



[지도1] 『輿地圖』廣州府 봉국사와 법륜사(지도의 한글 표기 필자)

4) 『寺刹令改正ニ依ル奉恩寺財産目錄』, 『貴重品 法輪寺』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로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이는 봉국사의 창건 시기가 조선 후기이고, 일제강점기 봉국사 이전에 따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제작된 지도에서 [지도1]과 같이 봉국사 옆에 법륜사를 나란히 표기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영조 연간 제작된 『廣輿圖』와 1872년(고종 9) 지방지도로 제작된 『廣州全圖』, 그리고 19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輿地圖』와 『地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사찰은 남한산성 남문 밖 영창대군묘·명선공주묘·명혜공주묘가 위치한 세촌면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두 사찰이 조선 후기 광주부를 대표하는 사찰이라는 점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申景濬(1712~1781)이 편찬한 『伽藍考』에 따르면, “봉국사, 법륜사는 함께 주 남쪽 15리에 있다.”⁵⁾고 한다. 이는 두 사찰이 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봉국사는 현존하지만, 법륜사는 1939년에 폐사된 사찰이다.⁶⁾ 그러므로 두 사찰 간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작성된 사료로 대강의 거리를 추정할 수는 있다. 1911년 작성된 『土地調査簿』와 1939년 작성된 『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을 종합하여 일제강점기 봉국사와 법륜사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봉국사의 주소지는 광주군 중부면 탄리 229번지이고, 법륜사는 광주군 중부면 탄리 219번지이다.⁷⁾ 두 사찰이 지근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11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측량하여 발행한 『京畿道 廣州郡 中部 細村面 炭洞(里)原圖』에서 두 사찰을 지번으로 찾아보면, [지도 2]의 검은 부분이다. 지도의 축척인 1,200분의 1을 적용하여 두 사찰 간 거리를 계산하면, 약 500m 거리가 나온다.

이처럼 봉국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법륜사는 仁祖代에 창건된 사찰이다. 永昌大君墓 옆에 자리하고⁸⁾ 있어 영창대군의 원찰로 추정된다. 고종대에는

5) 『旅庵全書』卷16, 『伽藍考』, 廣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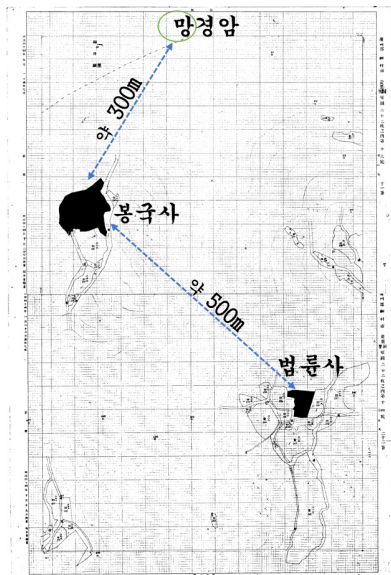
6)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7) 『土地調査簿』, 『廣州郡 中部面 炭里』, 臨時土地調査局, 1911;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平原大君과 齊安大君의 祀孫인 이규승이 양대군의 祭閣을 설치하고, 제향했던 사찰이다.⁹⁾ 또한, 英祖代 왕실에서 법륜사로 불품과 사람을 보내 선왕의 제사를 지냈다는 『承政院日記』 기사¹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륜사는 조선 왕실과 친밀한 사찰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봉국사가 요절한 명선·명혜공주의 원찰이었으므로 봉국사와 법륜사는 조선 왕실과 연계된 사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봉국사에서 약 300m 거리에 고종대 이규승이 중수한 망경암이 있다. 이규승은 망경암 절벽에 마애여래좌상¹¹⁾을 조성하고, 마애불 주변에 14개의 감실을 만들어 시간차를 두고 刻字했다. 명문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축원, 개인적인 구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조성된 망경암 절벽 앞에 이규승은 제단을 만들어 ‘망경암 칠성대’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망경암 칠성대의 연원을 밝히는 내용과 왕실의 축원을 담은 명문을 두 비석에 새겨 망경암 칠성대 앞에 세웠다.¹²⁾ [사진 1]에서 볼 수 있는 『望京庵小碑』와 『望京庵七星臺重修碑』이다.

봉국사, 법륜사, 망경암은 거리상으로도 근접했기 때문에 왕실 사람들이 이 세 곳을 오가며 제향하고 치성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규승이 조성한 『망경암칠성대중수비』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문이 있다. 이규승은 定宗의 열두



[지도2] 『京畿道 廣州郡 中部 細村面 炭洞原圖』의 봉국사 주변 사찰

8) 『梵宇攷』, 京畿道 廣州.

9) 김엘리, 『성남시 폐사찰法輪寺에 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78,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 13~24쪽.

10) 『承政院日記』 620冊, 英祖 2年 7月 2日.

11)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2호이다.

12) 김엘리, 위의 논문, 2017, 43~55쪽.



[사진] 망경암 칠성대와 망경암소비·망경암칠성대중수비(사진 좌측 하단)

째 아들 桃平君 李末生의 13대손이자 평원·제안대군의 봉사손인데,¹³⁾ 망경암 비석에 그가 봉국사, 법륜사, 망경암 칠성대에서 분향하고 치성했다는 내용을 기록했으며, 궁인들이 봉국사와 법륜사에서 致祭한 사실과 망경암 칠성대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남겼다.

이처럼 봉국사와 법륜사, 그리고 망경암은 왕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 봉국사와 법륜사는 봉은사 말사로 운영·관리되다가 1939년 봉국사는 京城府 三清町 4번지로 이전하고,¹⁴⁾ 법륜사는 경성부 昌信町 地藏庵으로 이전하였다.¹⁵⁾ 봉국사와 법륜사는 왕실과 연계된 사찰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조선 후기 창건되어 일제강점기 같은 시기에 이전되었다는 점이 유사하다.

13) 『瑤源譜略修正儀軌』, 光武 4年 4月 28日.

14)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15)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3. 역사와 기능 변천

일제강점기에 봉은사의 말사로 파악되는 봉국사는 두 곳이다.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의 奉國寺와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의 奉國寺이다.¹⁶⁾ 두 사찰 모두 봉국사로 명명된 시기는 조선 현종대이다. 또한 원찰의 기능을 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소재지를 불명확하게 제시한 사료는 두 대상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재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료를 근거로 봉국사의 역사를 파악하겠다.

1) 창건기

조선 正祖의 명으로 편찬된 『梵宇攷』에 따르면, 봉국사의 창건시기는 조선 顯宗代이다. 창건 시기와 더불어 명선·명혜공주의 묘가 사찰 근접한 곳에 있다고 한다.¹⁷⁾ 이는 봉국사가 명선·명혜공주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종대에 八道禪教十六宗都摠攝을 역임했던 승려 白谷 處能(1617~1680)은¹⁸⁾ 저서 『大覺登階集』에서 봉국사 창건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놓았다.

우리 주상전하가 즉위하신 이래 왕세자 외에도 따님을 두셨으니, 마치 중국 요임금의 아황, 여영 두 따님과 같았다. 장녀가 명혜공주, 차녀는 명선공주이다. 비로소 부마를 맞으려고 하였으나 미처 혼인하지 못한 채 1년 사이에 서로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주상은 이들의 죽음에 애통해하시고, 왕비께서는 더욱 가슴 아파하심이 그치지 않았다. 저승길에 명복을 비는 것으로써 부처만한 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장례를 마친 이듬해에 왕비께서 금강산의 승려 축존에게 명하여 두 무덤

16) 『寺刹令改正ニ依ル奉恩寺財産目録』

17) 『梵宇攷』, 京畿道 廣州.

18) 『大覺登階集』; 오경후, 『朝鮮後期 佛敎政策과 對應論: 白谷 處能의 <諫廢釋敎疎>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밖 몇 리에 절을 짓게 하였고, 궁중에서 사신을 보내 감독하였다. 사찰이 완공되자 봉국사라는 현관을 내리고, 향불을 바쳐 공양하였으니, 이곳은 곧 광주읍에서 서쪽으로 10리 되는 성부산 아래였다. 때는 갑인년 중추일. 팔도선교십육종도총섭 신승 처능은 합장하고 기록한다.¹⁹⁾

현종은 후궁이 없었고, 명성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1남 3녀를 두었다. 숙종과 명선공주, 명혜공주, 명안공주이다.²⁰⁾ 위 사료에 장녀와 차녀가 바뀌었지만, 그 외에 공주들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1673년 음력 4월에 차녀 명혜공주가 사망하고, 같은 해 음력 8월에 장녀 명선공주가 痘疫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두 공주는 부마를 정하고, 혼례를 앞둔 상황에서 연달아 요절했다.²¹⁾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두 공주의 저승길을 위로하기 위해 현종과 명성왕후는 광주부 영장산 소재 두 공주 무덤 근처에 봉국사를 세운 것이다. 봉국사가 창건된 갑인년은 1674년(현종 15)으로 명선·명혜공주가 사망한 이듬해이다. 이처럼 봉국사는 두 공주의 원당으로 창건되었다.

현종과 명성왕후는 봉국사에 명선·명혜공주의 위패를 봉안하고, 해마다 봄·가을에 宮人을 보내 제사를 지내면서 공주들의 명복을 빌었다. 숙종대 이르러 대사헌 沈檀(1645~1730)이 봉국사에서 왕실 제사는 옳지 않다고 간언했으나, 숙종은 제사를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²⁾

적어도 숙종대까지는 봉국사가 왕실 원찰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실록』에서 숙종이 누이들을 추모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선·명혜공주가 숙종의 동복 형제라서 애도하는 것은 당연했으나, 숙종은 두 공주에 대한 제사가 부모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숙종은 모친 명성왕후가

19) 『大覺登階集』 卷2, 『奉國寺新創記』

20) 『顯宗實錄』 卷1, 顯宗大王行狀.

21) 『顯宗實錄』 卷21, 顯宗 14年 4月 27日; 『顯宗實錄』 卷21, 顯宗 14年 8月 2日(명선공주는 맹사성의 후손인 孟萬澤과 정혼하였으며, 명혜공주의 정혼자는 申堯卿이었다. 사망 당시 나이는 명선공주가 14세, 명혜공주가 9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22) 『肅宗實錄』 卷23, 肅宗 17年 4月 2日.

산후병을 앓았을 때, 매일 꿇어앉아 미음을 올리며 근심했다고 하고, 부친 현종이 병환이 낫을 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으로 애태우며, 옷을 입은 채 띠조차 풀지 않았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²³⁾ 그래서 숙종은 명선·명혜공주를 추모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자 했던 현종과 명성왕후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현종에게는 명성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밖에 없었으므로 공주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선공주 생전에 현종이 청나라에서 조선 동지사 편으로 조선 조정에 보낸 은자 1천 냥을 명선공주에게 하사했던 일화가 있다. 이때 현종은 호조에 내려줘야 하는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신하 송준길에게 논핵을 당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현종은 요절한 두 공주를 언제나 가련히 여겨 슬퍼하였는데, 별도로 祠宇를 세우고 田庄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여 영구히 제사하도록 숙종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²⁵⁾

이에 숙종은 현종의 遺意를 받들었다. 숙종대 명선·명혜공주의 전장에 대한 혁파 논의가 있자, 숙종은 선왕의 뚜렷한 玉音이 귀에 남아 선왕이 남기신 뜻을 저버릴 수 없다면서 신하들의 전장 혁파 요청을 거절했다.²⁶⁾ 또 숙종은 仁慶宮 담장 쪽 15間을 떼어서 명선·명혜공주의 사당으로 지급했다.²⁷⁾ 신하들이 명선·명혜공주의 사우를 壽進宮으로 옮겨 세워서 제사를 받들게 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이때도 숙종은 별도로 사우를 세우는 것이 선왕의 뜻이라고 말했다.²⁸⁾ 숙종이 명선·명혜공주를 제사로써 추모하는 것은 현종과 명성왕후를 향한 효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봉국사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명으로 창건되었기 때문에 숙종 재위 연간에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명선·명혜공주를 추

23) 『肅宗實錄』 卷65, 肅宗大王行狀.

24) 『顯宗實錄』 卷16, 顯宗 10年 3月 11日.

25) 『肅宗實錄』 卷12, 肅宗 7年 12月 13日.

26) 『肅宗實錄』 卷12, 肅宗 7年 12月 13日.

27) 『肅宗實錄』 卷14, 肅宗 9年 4月 26日.

28) 『肅宗實錄』 卷15, 肅宗 10年 12月 25日.

모하는 공간으로 운영 유지되었을 것이다.

2)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숙종 이후에 봉국사가 원찰의 기능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조 즉위년에 명선·명혜공주의 祠版이 수진궁으로 들어가면서²⁹⁾ 별도로 갖췄던 명선·명혜공주의 사우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봉국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국사에서 왕실 지원으로 명선·명혜공주의 제향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고종대에 宮人이 봉국사를 왕래했던 정황은 살필 수 있다.

두 개의 사료로 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봉국사 대광명전 후불탱화인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이다. 畫記에 따르면, 佛畫는 1873년 6월 三角山 興天寺에서 조성되어 영장산 봉국사로 이운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시주자인데, 제작에 참여한 대시주자는 尙宮 李氏 妙眞心이다.³⁰⁾ 대개 상공의 시주로 제작된 불화일 경우 佛事に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왕실이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실은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지역 사찰에 내명부의 명을 받는 상공을 통해 왕실의 祈願을 목적으로 한 불화를 후원한 사례³¹⁾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료는 1898년(광무 2)에 이규승이 세운 『망경암칠성대 중수비』이다. 명문에 따르면, 이규승은 1872년 평원·제안대군의 사순이 된 후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봉국사와 법륜사, 망경암에서 분향하고 致誠을 드렸다고 한다. 어느 날 이규승은 봉국사와 법륜사에서 致祭를 끝내고 돌아가는 궁인들과 마주쳤는데, 궁인들이 이규승의 정성에 감동하여 고종에게 이규승의 치성행위를 알리게 되었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 이규승이 1885년 왕

29) 『正祖實錄』 卷1, 正祖卽位年 4月 10日.

30)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화기』

31) 조선후기 제작된 불화 가운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상공이 시주자로 참여한 불화는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남양주 불암사 괘불도>, <서울 봉은사 괘불도>, <서울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등이 있다.

명으로 입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³²⁾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종을 측근에서 모신 궁인들이 봉국사에서 치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봉국사는 고종대까지 왕실과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 말기인 1910년 1월 25일에 봉국사는 淨土宗教會說敎所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다. 종파의 명칭은 불교 정토종으로 하고, 관리와 유지는 주지 金星月이 담당하였다.³³⁾ 봉국사에서 정토종교회설교소를 설치한 것은 당시 시대성을 반영한다.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일본의 불교 종파가 전래했는데, 진종 大谷派, 日蓮宗, 진종 本願寺派, 정토종, 曹洞宗 등이다.³⁴⁾ 이 중에서도 정토종의 포교 확장세가 대한제국기에 가장 우세했다. 정토종은 대한제국 皇室尊牌를 안치하고, 황실에 대해 祝願하면서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 근위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한글로 『東洋教報』를 발간하고, 한글로 『淨土宗綱要』를 편찬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四殿의 尊牌를 무기 삼아 지회와 포교소를 확장하였다. 여타 종파에서 볼 수 없는 포교전략으로 정토종은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³⁵⁾ 예로부터 한국인의 정서에는 불교 정토 신앙이 내재하고 있어 일본 정토종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봉국사도 정토종으로 종파를 변경하여 정토종의 포교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쇠락해진 봉국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가 金敎爽에 의해 독립운동 회합의 공간으로 사용된 정황도 살필 수 있다. 1939년에 봉국사의 범통과 자산이 京城府 三清町 소재 포교소

32) 『望京庵七星臺重修碑』 光武 2年.

33) 『說敎所設立認可申請書』, 統監府, 1910, “名稱及所在地 淨土宗教會說敎所 京畿道廣州郡細村面炭洞奉國寺 宗教/名稱 佛敎淨土宗 管理及維持方法 管理及維持ハ住持僧金星月之ヲ擔當ス”

34) 윤기엽, 『개화기 일본불교의 포교 양상과 추이』,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4,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35) 한동민, 『대한제국기 일본 淨土宗의 침투와 불교계의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로 이전되었다가 1958년 비구니 法雲이 입주하여 퇴락한 봉국사의 명맥을 이었다. 본절에서는 1939년 봉국사가 경성부 포교소로 이전하기까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봉국사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1911년 6월 3일 7개 조의 사찰령이 공포되고,³⁶⁾ 같은 해 7월 8일에는 8개 조의 ‘사찰령 시행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사찰은 30개의 본산에 소속되어 관리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사찰 재산 처분권과 주지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³⁷⁾ 이에 봉국사는 봉은사의 말사로 편입되었고, 주지의 임명도 조선총독부의 허가로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관보』에서 1912년부터 1939년까지 봉국사에 임명된 주지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표1] 일제강점기 봉국사 역대 주지

취임 연도	주지	퇴임 사유
1912	羅晴湖	사직
1914	金成律	임기 만료
1918	白東元	사망
1920	申道淨	임기 만료
1923	金元成	임기 만료
1928	權斗晶	임기 만료
1931	金常信	임기 만료
1934	金常信	임기 만료
1937	金常信	사직
1939	沈在吉	사찰 이전

출전 :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부터 1939년까지 봉국사에 임명된 주지는 재임한 김상신을 포함하여 여덟 명이다. 그런데 봉국사의 주지 명단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가 상주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기록이 있다.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

36) 『朝鮮總督府官報』 제227호 明治 44年 6月 3日.

37) 『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 明治 44年 7月 8日.

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16년 9월 2일부터 1916년 10월 30일까지 경기도 고적을 답사하고 작성한 보고서 『大正五年度 遺物遺跡調査報告書 題壹』이다.

이마니시 류는 봉국사와 법륜사를 조사하여 두 사찰을 함께 기록하였는데, 둘 다 작은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법륜사에는 평원대군의 祭殿 외에도 極樂寶殿과 僧堂이 있고, 세 명의 승려가 거주한다고 하였다. 반면, 봉국사는 명선·명혜공주의 靈牌를 안치했다는 것 외에 당우 관련 기록은 없고, 승려에 대한 언급도 없다. 다만, 세속에서 보살이라고 부르는 머리를 깎지 않은 늙은 여성이 거주한다고 하였다.³⁸⁾ 1916년의 봉국사는 명선·명혜공주의 위판을 모신 殿宇만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한 여성만 상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법륜사와 비교한다면, 두 사찰 모두 조선 왕족의 위판을 모신 제향의 기능을 한 사찰이지만, 봉국사는 사찰 본연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영락한 모습이다.

그런데 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이 조사한 광주지역의 『土地調査簿』에 따르면, 봉국사의 사찰지는 1,390평이고, 법륜사지는 370평이다.³⁹⁾ 두 사찰의 토지 규모는 [지도2]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토지 규모만 비교해보면, 봉국사는 창건 당시 작은 규모로 출발하지 않았다. 숙종대에 봉국사는 한양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 여럿이 함께 숙박이 가능했을 정도로 규모가 있고, 알려진 사찰이었다.⁴⁰⁾

그러나 이마니시 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명선·명혜공주의 祭閣 외에 法殿, 僧堂, 승려 인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16년의 봉국사는 운영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봉국사의 위세도 국운과 함께 쇠잔해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8) 『大正五年度 遺物遺跡調査報告書 題壹』, 『京畿道 廣州郡』,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 1917.

39) 『土地調査簿』, 『廣州郡 中部面 炭里』, 臨時土地調査局, 1911.

40) 숙종대 관료였던 權相—은 임지로 가는 길에 봉국사에서 동행자와 묵었는데, 선비 네다섯 명이 있어 그들과 시를 지었다고 한다(權相—, 『淸臺日記』上, 肅宗 37年 6月 17日). 봉국사가 한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이 숙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

1910년대 봉국사는 비록 재임 중인 주지가 있었다더라도 고적조사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폐한 사찰이었다. 이러한 봉국사의 환경은 독립운동가의 은거지가 되기에 적합했을지도 모르겠다. 1919년 3·1운동의 기운이 1920년대 초까지 지속된 가운데, 일제는 3·1운동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19년 4월 15일에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⁴¹⁾을 공포하였다. 광주군 중부면 탄리 거주자였던 김교상(1889~1946)은 1920년 12월에 ‘1919년 제령 제7호’와 출판법을 위반한 죄명으로 검거됐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⁴²⁾ 검거 당시 그가 은거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합을 가졌던 장소가 봉국사였다.

김교상은 1920년 2월경에 明濟世·曹晚植·崔承煥 등과 경찰 查察係 폭격을 계획하였고, 韓震教와 자금을 모아 인쇄기를 구비하여 大韓獨立軍歡迎團의 격문을 제작하였다. 또한 조만식의 의뢰를 받아 暗殺團趣旨書 약 4,000매와 김교상 자신이 초안한 宣告文 2,000여 매를 대한독립군환영단본부 명의로 인쇄하여 暗殺團 수장 金相玉에게 배포를 부탁하고자 하였으나, 김상옥의 단원 20여 명이 동대문경찰서에 검거되면서 김상옥이 도피하게 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교상은 韓震教와 함께 大韓獨立團 조직을 도모하였다. 먼저 각 군에 支部를 설치한 후에 中央本部를 조직하여 이를 통일하려고 계획했으나 자금이 없어 계획을 중단하고, 봉국사에 우거하면서 여러 차례 동지와 회합하며, 자금을 마련할 동지를 물색하였다.⁴³⁾

그 후에 김교상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봉국사에 살면서 누누이 동지와 회합을 꾀하고, 자금을 내놓을 동지를 물색하였다. …(중략)… 9월 8일 봉국사에서 김교상

41) 제1조 ①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만 형법 제2편 제2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동한 자의 죄도 전항과 같다. 제2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발각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제3조 이 영은 제국 외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에게도 적용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4583#0000>)).

42) 『金敎爽 李載仁 姜學熙 판결문』(문서번호 大正9년 刑公 제1667호), 조선총독부재판소,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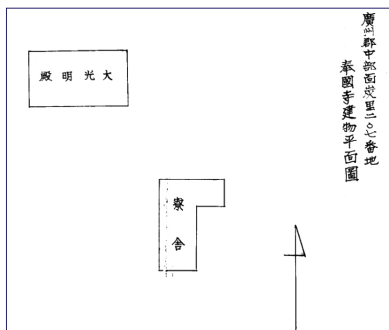
43)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共7冊 其3, 『不逞企劃 發見檢舉』(문서번호:密 第33號 其29/高警 第2480號), 陸軍省, 1921.

은 김기환을 동반하여 두 사람(이섭, 홍영전)과 합동으로 회합하였다.⁴⁴⁾

出資할 단원이 늘어가던 중에 大韓獨立團京畿道機關의 총지휘관인 金起漢이 검거되면서 김교상도 체포됐다.⁴⁵⁾ 이로써 大韓獨立團은 성립 초반에 와해됐지만, 김교상과 동지들은 봉국사에서 전국 군에 지부를 둔 독립운동 단체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1920년에 봉국사는 大韓獨立團의 독립운동 기지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봉국사는 한차례 중수되었다. 『奉恩寺末寺誌』에 “대정 13년 갑자에 주지 권두정이 신도의 시주를 받아 중수하였다.”⁴⁶⁾라는 기록이 있다. 물론 대정 13년은 1924년이고 권두정이 봉국사 주지로 취임한 시기는 1928년이라서 시기상의 오류는 보이지만, 1920년대 봉국사를 중수하는데 권두정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중수로 인한 봉국사의 변화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39년 작성된 『봉국사 이전 허가원에 관한 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939년 당시 봉국사의 건물평면도 [그림1]을 살펴보면, 전우는 大光明殿과 寮舍이다. 그런데, 봉국사 재산 목록에서 대광명전 10間, 요사 6間, 羅漢殿 3間, 祭閣 3間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나한전과 제각은 훼손 정도가 심하여 건물평면도에 넣을 수 없는 상태로 추정된다. 사찰 이전 사유에서도 수리할 방도가 없을 정도



[그림1] 봉국사 건물평면도

44)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不逞企劃 發見檢舉(문서번호:密 第33號 其29/高警 第2480號)』, 陸軍省, 1921. “其ノ後金教爽ハ京畿道廣州郡中部面奉國寺二居ヲ構ヘ屢屢同志ト會合資金ヲ提出スヘキ同志ヲ物色シツツアリシ…(中略)…同月八日金起漢ヲ同伴ン前記奉國寺ニ於テ金教爽ト會合ノ上兩者合同”

45)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不逞企劃 發見檢舉(문서번호:密 第33號 其29/高警 第2480號)』, 陸軍省, 1921.

46) 『奉恩寺末寺誌』, 『奉國寺』

로 전우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기 때문이다.⁴⁷⁾ 따라서 1920년대에 중수되었을 경우, 묘사의 중수와 대광명전의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봉국사는 공주들에 대한 제향 공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실상 폐사되어 봉국사 역사의 공백을 만드는 시기이다. 1936년에 일제는 명선·명혜공주의 묘를 고양시 서삼릉 왕자·공주묘로 遷葬했다. 이로써 공주들의 묘소 가까운 곳에서 공주들의 靈牌를 봉안하고, 추모하고자 했던 현종과 명성왕후의 뜻이 어그러졌다.

1939년에 이르러 봉국사는 경성부 삼청정 4번지로 이전하였다. 사찰의 이전은 법통과 자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로 사찰의 위치만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⁴⁸⁾ 운영유지가 곤란한 사찰을 폐사시키고, 신설 사찰이 사찰의 위격을 높일 목적으로 폐사찰의 법통을 인수하는 방식의 이전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부 소재 봉국사와 법륜사이다.

봉국사의 이전을 신청한 주지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9년 3월 15일 봉국사 주지로 취임 인가를 받은 심재길이다. 봉국사의 이전 허가는 동년 11월 1일에 승인됐으니,⁴⁹⁾ 심재길은 봉국사 주지로 취임하자마자 이전을 추진한 것이다. 봉국사가 이전된 경성부 삼청정 4번지는 봉은사 말사인 戀主庵의 포교소이다. 1933년에 포교소로 신고된 신설 사찰이다. 1939년 봉국사가 이전할 당시 이 포교소의 소유자는 봉국사 주지인 심재길이다.⁵⁰⁾ 본인 소유의 포교소로 봉국사를 이전한 것이다. 그런데 1934년 7월 1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도 연주암 포교소의 포교 담임자가 심재길로 나와 있다.⁵¹⁾ 이를 보면, 심재길은 봉국사 이전을 목적으로 봉국사의 주지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

47)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48) 함경도 성진군 학성면 雲興寺는 산간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여 신자가 점차 감소하자 사찰운영상 유리한 장소에 사찰을 개축하고자 1924년 이전허가를 신청하였고(『寺刹移轉許可申請ノ件』, 朝鮮總督府, 1924),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聳岩寺는 건물의 부패·훼손이 심하여 人家 조밀지역에 신축하고자 1924년에 이전허가를 신청하였으며(『聳岩寺移轉許可願ノ件』, 朝鮮總督府, 1924), 경기도 경성부 龍光寺는 소속 신도의 증가로 인한 건물 확장을 위해 1932년 이전 허가를 신청했다(『寺院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2).

49) 『朝鮮總督府官報』 제3840호 昭和 14年 11月 7日.

50)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51) 『朝鮮總督府官報』 제2257호 昭和 9年 7月 19日.

방하다. 같은 사례를 법륜사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법륜사가 1939년 경성부 창신정 지장암으로 이전될 당시 법륜사 주지는 지장암의 소유주이자 주지인 姜允會였다.⁵²⁾ 그는 지장암의 사세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법륜사의 법통을 이어받기 위해 법륜사의 주지가 된 사례이다. 봉국사 주지 심재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봉국사를 이전하면서 주지 심재길은 봉국사 건물과 귀중품을 처분할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사찰지 1,390평은 경작지로 만들어서 소작을 주고, 건물은 훼손이 심해서 사용 가능한 목재만 봉은사 복구 자재로 사용하게 하며, 귀중품은 전부 이전지로 이안할 계획이었다.⁵³⁾ 그런데 대광명전은 봉국사 이전 후에도 해체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실체를 볼 수 있다. 다행히도 대광명전이 남아 있어 봉국사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이었다.

6.25전쟁 이후 1958년 비구니 법운이 봉국사에 입주하였다고 전하며, 1974년에는 대광명전을 해체 보수하였다. 당시 봉국사 승려 혜성의 증언에 의하면 중요 부재는 그대로 두고 벽체와 지붕을 보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보수 과정을 거쳐 1980년에 봉국사의 법전인 대광명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되었다.⁵⁴⁾

봉국사는 조선 왕실의 문화와 대한제국기 종교계의 변화상,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겪은 시련의 역사를 담은 사찰이다. 광복 이후 중수되어 제 이름을 찾은 봉국사에서 한국사의 여러 단면을 읽어낼 수 있었다.

52)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53)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54) 京畿道, 『(2006年度)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 李恒老生家·奉國寺 大光明殿』, 경기도, 2007, 158~163쪽.

4.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

1) 창건 시기 봉국사의 법전과 주존불

봉국사의 법전은 대광명전이다. 따라서 주불은 비로자나불이 안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이 주불일 경우 법전은 極樂寶殿·無量壽殿·無量殿·普光明殿·阿彌陀殿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수과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봉국사는 현종대 창건 시기부터 대광명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광명전에 봉안된 불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은 1939년까지 아미타불이 아닌 비로자나불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일제가 1929년 6월 10일에 공포한 제령 제9호 사찰령 일부 개정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사찰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사찰 재산의 품목, 종류, 개수 등을 조사하여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재산대장 양식에 맞춰⁵⁵⁾ 『奉恩寺本末財産臺帳』과 『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이 작성된다. 여기서 봉국사의 귀중품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불상은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불 2위가 봉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⁶⁾ 둘째, 1933년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사찰령 개정에 의한 조사내용을 공포하여 봉국사 재산으로 두 불상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다.⁵⁷⁾ 셋째, 1939년에 봉국사가 경성부로 이전할 당시 작성된 『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에서 여전히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두 불상만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⁵⁸⁾

이처럼 봉국사에는 비로자나불이 봉안됐으므로 봉국사의 법전은 대광명전이 당연하다. 『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의 재산 목록과 건물평면도, [그림1]에서도 봉국사의 법전은 대광명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5) 『朝鮮總督府官報』 제730호 昭和 4年 6月 10日.

56) 『寺刹令改正ニ依ル奉恩寺財産目録』, 『貴重品 奉國寺』

57) 『朝鮮總督府官報』 제1814호 昭和 8年 1月 20日.

58)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표2] 봉국사 불상 목록을 기재한 문헌

『봉은사본말재산대장』	『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	『조선총독부관보』 제1814호	『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

봉국사 대광명전 내부에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을 나란히 봉안했을 수도 있지만, 석가불은 나한전에 본존불로 안치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39년 봉국사 이전 때 건물평면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재산 목록 건물 내역에서 3칸짜리 나한전의 존재가 확인되고,⁵⁹⁾ 석가모니의 제자들인 나한을 안치한 나한전은 석가불을 주존불로 삼기 때문이다.

위 사료들을 종합하여 봉국사의 건물과 내부 존상을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 대광명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봉국사 전각을 『경기도 광주군 중부 세촌면 탄동(리)원도』 위에 배치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봉국사 건물배치도 및 봉안 불상

59)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봉국사의 두 불상은 창건 때부터 대광명전과 나한전에 각기 안치되어 1939년까지 봉국사에 나란히 봉안되었다. 물론 대광명전에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고, 협시불로 좌우에 석가불과 아미타불이 삼신불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봉국사의 불상 목록에는 아미타불이 없고, 나한전이 설치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만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 대광명전의 후불탱화를 근거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불화는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라는 문화재명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10호에 지정되었다. 화기에는 1873년 6월 삼각산 흥천사에서 조성되어 영장산 봉국사로 이운한 내용과 상궁이 대시주자로 참여한 사실을 명시했다. 이로써 이 불화가 조선 말기부터 봉국사에 봉안되어 현재에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2016년 문화재 지정 당시 대광명전에 주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후불탱화로서 명칭을 ‘아미타불회도’라고 하였지만, 화기에서 확인된 명칭은 ‘上壇幀’이다. 이는 불단 후불벽에 걸리는 불화라는 의미이다. 1933년 『조선총독부관보』와 1939년 『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에서도 掛圖형식의 後佛幀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부터 ‘아미타불회도’로 명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도상학적으로 분석하면, 불화 중앙 불단에 결가부좌한 주불의 수인이 說法印을 하고 있어 아미타불을 나타냈으므로 ‘아미타불회도’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석가불을 나타낸 靈山會上圖에서도 降魔觸地印 대신 설법인의 수인을 볼 수 있다.⁶⁰⁾ 대표적으로 <안성 청룡사 영산회괘불탱>이 있다. [그림3]과 [그림4]를 도상학적으로 비교해보면, 화면에 묘사된 존상들의 배치와 주불의 수인이 동일하다. 후불탱화에서 설법인의 불상을 반드시 아미타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가 나한전의 후불탱화였다면, 영산회상도로 지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0)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靈駕山에서 『법화경』 설법을 상징한 대웅전 후불탱화이다. 『법화경』 관점으로 보면, 영산회상도의 석가불 수인은 설법인이 타당하다. 석가불의 향미촉지인 수인은 『화엄경』 관점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염중섭, 『靈山會上圖에 관한 상징과 의미 분석』,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345~359쪽).



[그림3]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1873년)



[그림4] 안성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1658년)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는 화면 상단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가 표현되었고, 하단에는 사천왕을 배열하였으며, 화면 중단에는 주불 주변에 6위의 협시보살을 그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측면을 그려서 보관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아 협시보살의 존명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민머리에 육환장과 구슬을 들고 있는 지장보살만 존명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존불 또는 협시보살의 존명이 모호할 경우 화기에는 의례용으로만 사용되는 의미의 ‘상단탱’이라고 기재하는데,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화기에서도 불화의 명확한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상단탱’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또 불화를 조성했을 당시에는 아미타불회도로 제작했다가 봉국사로 이운하면서 대광명전에 적합하지 않아 화기에는 ‘상단탱’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불화가 조성된 사찰은 화기에 의하면, 삼각산 홍천사이다. 1909년 조사기록인 『寺刹考』에서 한성부 소재 홍천사의 불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불은 아미타불이고, 협시불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다.⁶¹⁾ 이는 극락전의 삼신불이므로 아미타불회도를 후불탱화로 조성했을 것이다.

61) 『寺刹考』, 地方局社寺課, 1909.

결론적으로 <성남 봉국사 아미타불회도>만으로는 대광명전에 아미타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1939년까지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불은 비로자나불로 보아야 한다.

2) 봉국사 비로자나불의 所在

봉국사 법전 대광명전의 주존불이 비로자나불이었다면, 봉국사의 역사적 가치를 提高하는 차원에서 비로자나불의 소재지는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1939년 봉국사 이전과 함께 혼잡해지고 유실된 봉국사의 불상을 추적해 보겠다. 먼저 비로자나불과 나란히 봉국사에 봉안되었던 석가불의 소재지를 밝혀 이를 단서로 비로자나불의 소재지를 파악하겠다.

1939년 11월 봉국사의 법통과 재산이 이전된 사찰은 심재길 소유의 연주암 포교소이고, 정확한 주소는 京畿道 京城府 三淸町 4번지이다. 이 주소지의 현재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4번지이고, 지금은 칠보사가 자리하고 있다. 칠보사의 정확한 연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칠보사 대웅전 상량문에 의거하면, 1932년에 춘성이 사찰을 창건해 삼각사라고 하다가 1939년 경기도 광주군 성부산에 있던 봉국사를 이전하고 삼각사를 폐한 후, 심혜운이 사찰의 주지로 취임하여 명부전, 삼성각을 증축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은 『奉恩寺末寺誌』에 기록된 봉국사 연혁과도 일치하는데, 1932년 봄에 이춘성이 점을 쳐서 삼청동 백악산 동쪽 기슭에 점지를 받아 법당을 창건하였고, 1939년 11월에 봉국사가 삼청동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⁶²⁾ 춘성이 창건한 사찰에 봉국사가 이전했다는 두 기록이 일치하고, 칠보사 상량문의 주지 심혜운은 봉국사 이전을 실행했던 봉국사 주지 심재길로 추정된다. 따라서 1939년 봉국사가 이전한 사찰은 현재의 칠보사이다.

칠보사에는 보물 제2004호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소장되어 있다. 칠보사의 석가불은 보물 제1621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腹藏物 및 불상 양식

62) 『奉恩寺末寺誌』, 『奉國寺』.

의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학계는 이를 근거로 두 불상이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본다.⁶³⁾ 조성연대와 봉안처를 유추할 수 있는 두 불상의 복장물을 정리하면 [표3]⁶⁴⁾과 같다.

[표3] 목조석가여래좌상·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성 발원문 없음	1622년 장렬왕후 『비로불원문』
1622년 청계사 개관 『묘법연화경』 7권	1622년 청계사 개관 『묘법연화경』 8책
1627~1631년 용복사 개관 『대방광불화엄경소』 13책	1629~1631년 용복사 개관 『대방광불화엄경소』 5책
17세기, 일제강점기 『다라니』	17세기 『다라니』
18세기 인원왕후 『대단월 대비 정묘생 김씨 발원문』	17세기~18세기 『불설불명경』 4책
1924년 『곤명 석씨 축원문』	1924년 『곤명 석씨 축원문』
은제 후령통	은제 후령통

두 불상의 복장물은 여러 번 추가적으로 납입되었는데, 『묘법연화경』,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동일한 전적류가 나왔고, 유사한 형태의 후령통 안에 같은 내용의 『곤명 석씨 축원문』이 복장물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두 불상은 같은 시기 제작되어 동일 사찰 내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3)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송은석, 『1622년 자수사·인수사의 장렬왕후 발원불사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石堂論叢』 67, 석당학술원, 2017.

64)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물 목록의 출처는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청, 2018과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조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이고,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물 목록의 출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청, 2009와 문명대 외, 『지장암: 지장암의 역사와 문화』, 한국미술사연구소·지장암, 2010이다. 단, 『대단월 대비 정묘생 김씨 발원문』과 『불설불명경』의 작성 시기는 원문의 간지를 바탕으로 필자가 추정한 시기로 표기했다. 미술사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단월 대비 정묘생 김씨 발원문』의 대비 김씨를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로 추정했으나(문명대, 위의 논문, 2014; 송은석, 위의 논문, 2017), 인목왕후(1584~1632)는 갑신생이다. 따라서 정묘생 대비 김씨는 숙종 계비 인원왕후(1687~1757)이고, 대비로 있었던 경종대 즉, 1720년 이후에 복장물을 추가 납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불상의 조성연대는 목조비로자나불의 『비로불원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불상 조성의 발원지는 광해군의 정비인 章烈王侯이다. 그녀는 1622년 왕과 세자, 세자빈 박씨를 위해 발원하고, 先王先后의 靈駕를 비롯해 자신의 친정 부모와 세상을 떠난 왕자와 공주들, 친정 형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불상을 조성하였다. 발원문 말미에는 이때 조성한 불상을 밝혔는데, 비로자나불 2존, 석가여래 3존, 노사나불 2존, 미타여래 2존, 관세음보살 1존, 대세지보살 1존, 총 11존상을 조성하여 慈仁壽兩寺에 봉안했다고 한다.⁶⁵⁾ 자인수양사는 왕실 여성이 출가하던 비구니 사찰 慈壽院과 仁壽院을 말하고, 1661년(현종 2)에 폐사되었다.⁶⁶⁾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622년에 장렬왕후가 조성하여 慈仁壽兩寺에 봉안한 불상이다.⁶⁷⁾

두 불상은 慈仁壽兩寺가 폐사되자 광주부 법륜사로 이운되었다가 1900년대 초에 칠보사와 지장암으로 각각 이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⁶⁸⁾ 이와 더불어 목조비로자나불이 지장암으로 이운된 시기를 지장암의 중창 시기인 1924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⁶⁹⁾ 이는 『七寶寺沿革』의 내용과 지장암이 법륜사의 법통을 계승한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칠보사연혁』에 의하면, 대웅전 본존 즉,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심혜운 주지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청량산 영창대군묘 옆에 있던 봉은사 말사 법륜사에 모셨던 삼존 중 비로자나불은 동대문 지장암에 모시고, 석가모니불은 본사에 모시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1972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추적해 보면, 오류가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혜운 즉, 심재길은 1934년에 연주암 포교소의 담임자가 되었고, 1939년에 봉국사 주지가 되어 자신 소유사찰인 연주암 포교소로

65) 『昆慮佛願文』

66) 『顯宗實錄』 卷1,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崇陵誌.

67) 1622년 장렬왕후가 조성한 11구의 불상 가운데 2021년 현재 소장처가 밝혀진 불상은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이다.

68) 문명대, 위의 논문, 2014, 343~349쪽.

69) 문명대 외, 위의 책, 2010, 110쪽.

봉국사의 법통을 이전했다. 그가 법륜사의 불상을 이운했다면, 1934년에서 1939년 사이에 불상을 옮겨야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 법륜사의 불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 『봉은사본말재산대장』·『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조선총독부관보』 제1814호·『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은 법륜사 불상으로 오직 아미타불만 기재하고 있다.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법륜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1924년경 법륜사의 비로자나불이 지장암으로 이운되었다는 견해도 1939년 작성된 『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의 지장암 소장 귀중품 목록으로 반박할 수 있다. 법륜사의 법통을 지장암으로 이전할 당시에 移轉地인 지장암의 귀중품 목록이 작성되었다. 만약 1924년경에 비로자나불이 지장암으로 이전되었다면, 1939년 지장암 소장 귀중품 목록에서 불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록에서 비로자나불은 찾을 수 없고, 목조좌상은 아미타불 1위, 관음보살 1위, 지장보살 1위가 전부이다.⁷⁰⁾ 따라서 『칠보사연혁』은 설화 전승 과정에서 일부 오기되었고, 비로자나불이 1924년 이운되었다는 견해도 재고되어야 한다.

두 불상은 법륜사가 아닌 봉국사에서 칠보사와 지장암으로 이운된 것이다. 봉국사에 두 불상과 동일한 존명의 불상들이 존재했고, 봉국사의 이전지에 석가불이 현존하고 있으며, 석가불과 복장물이 유사한 비로자나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이 봉국사에 있었던 불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 사료가 있다. 두 불상의 복장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곤명 석씨 축원문」이다.

[표4] 복장물 「곤명 석씨 축원문」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廣州郡中部面山城里居住 坤命丁亥生 石氏 往生極樂之大願 甲子三月三十日伏祝	廣州郡中部面山城里居住 坤命丁亥生 石氏 往生極樂之大願 甲子三月三十日伏祝

70)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표4]⁷¹⁾를 보면, 동일한 내용의 축원문인데, 일제강점기 행정구역명이 나오고 갑자년 간지가 있어 작성 연도를 1924년으로 단정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바라는 석씨는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거주자였다. 봉국사도 광주군 중부면에 자리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찰이다. 1924년에는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이 봉국사에 안치되었던 시기이므로 같은 축원문을 두 불상에 봉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증할 것은 실재하는 두 불상과 기록상의 두 불상의 크기 비교이다. 『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조선총독부관보』·『봉국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에서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의 크기는 높이만 파악할 수 있는데, 세 자료 모두 동일한 수치를 기재했다.

[표5] 실재 불상과 기록상의 불상 크기 비교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석가여래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높이 117.0 cm	높이 117.5cm	높이 4척 5촌	높이 4척 5촌

칠보사와 지장암에 실재하는 두 불상의 높이는 대좌를 배제한 불상만의 크기이고,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 기록상의 두 불상은 4척 5촌의 높이로 이 불상들 또한 동일한 크기인데, 일제강점기에 尺貫法으로 측정된 길이를 cm로 환산하면,⁷²⁾ 두 불상의 높이는 136.35cm이다. 이는 불상 대좌의 크기를 포함한 수치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수치상 15-20cm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실재하는 불상과 기록상의 불상은 동일한 불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봉국사가 이전할 당시 이전지 연주암 포교소에

71)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청, 2018;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청, 2009.

72) 구한말 1909년 9월 도량형법(법률 제26호)이 반포되어 尺貫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曲尺(30.3cm)이 길이의 기준 '척'이다. 1964년 1월 1일 이후부터 척관법이 폐지되고, 미터법이 전면 시행되었으며(『동아일보』, 1962년 7월 24일 조간; 박성래, 『한국 도량형사』, 『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이종봉, 『韓末 度量衡制의 개혁과 성격』, 『石堂論叢』 64호, 석당학술원, 2016), 1척은 30.3cm로 환산되었다(상공부 중앙계량국, 『계량단위 환산표』, 1964).

석가모니불이 존재했는데, 이는 목조가 아닌 흙으로 제작한 불상이며, 높이도 1척 8촌 5푼⁷³⁾ 즉, 약 56cm의 길이로 현존하는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차이가 있어 별개의 불상이다. 따라서 칠보사와 지장암에 현존하는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은 봉국사의 불상들과 동일 존상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1939년 11월 1일자로 봉국사 이전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봉국사의 석가불은 현재 칠보사인 연주암 포교소로 이운되었고, 비로자나불은 지장암으로 이운된 것이다.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바닥면에 『改金重修毘盧遮那佛緣記』가 붙어 있는데, 지장암에서 1939년 개금 중수에 참여한 緣化秩과 시주자 등을 기록한 것이다.⁷⁴⁾ 개금중수기에는 연도 외에 월일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봉국사 비로자나불이 지장암으로 이운된 시기는 이전 허가를 받은 1939년 11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불상이 이운되면서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봉국사의 석가불은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이고, 비로자나불은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실재하고 있다. 이 두 불상의 조성 시기는 광해군 시기이며, 慈壽院·仁壽院에 봉안되었다가 현종 즉위 초 시행된 척불정책으로 慈壽院·仁壽院이 폐사되면서 새로운 사찰로 이운하게 되었다. 현종 15년에 봉국사가 창건되자 석가불은 나한전에 안치되고, 비로자나불은 대광명전에 주존불이 되었다. 그러나 두 불상은 1939년 봉국사 이전 과정에서 소재지가 혼잡해져 결국 봉국사와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이었다.

3)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연원

봉국사 대광명전의 당초 주존불이 비로자나불이므로 현재 주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미타불의 원봉안처와 이운된 시기를 더듬어 그 연원을 추정함으로써 아미타불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복장발원문이 발견되

73)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74)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청, 2009.

지 않아 조성시기와 원봉안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봉국사 주변 사찰에서 아미타불의 연원을 밝힐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898년(광무 2)에 이규승이 조성한 「망경암칠성대중수비」에는 “법륜아미, 봉국세존, 망경약사”⁷⁵⁾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는 법륜사에 아미타불을 봉안했다는 뜻이고, 봉국사에는 석가불을 봉안했다는 의미이며, 망경암에는 약사여래불을 모셨다는 뜻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규승이 세 사찰을 오가며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이규승은 세 사찰의 불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규승이 비석을 세울 당시 망경암 절벽에는 마애여래불이 새겨져 있었고,⁷⁶⁾ 봉국사에는 석가불이 봉안되었기 때문에 이규승이 새긴 명문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명문은 1898년경 법륜사에 아미타불이 봉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륜사는 창건때부터 아미타불을 주불로 봉안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이마니시 류가 작성한 고적조사보고서이다. 이마니시 류는 법륜사 극락보전에 걸려있는 중수기를 발견했는데, 법륜사 극락전은 1718년(숙종 44)에 중건됐다는 기문이었다.⁷⁷⁾ 법륜사는 인조대 창건되었지만, 숙종대에 한차례 중수한 것이다. 중수된 극락보전은 아미타불을 주불로 봉안한 전우이므로 법륜사는 창건 때부터 아미타불을 안치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법륜사에 극락보전과 아미타불의 존재는 일제강점기 작성된 『봉은사본말재산대장』·『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조선총독부관보』·『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에서 찾을 수 있다. 법륜사 재산 목록에서 불상은 아미타불뿐이며, 1939년 법륜사가 경성부 지장암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법전은 극락보전이었다. 법륜사는 창건 시기부터 이전 시기까지 극락보전을 법전으로 하고, 아미타불을 주불로 삼았다.

75) 『望京菴七星臺重修碑』.

76)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의 조성시기는 마애불 아래 새겨진 각석에 의거해 1897년(광무 원년)으로 보고 있다(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성남시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1, 158쪽).

77) 『大正五年度 遺物遺跡調査報告書 題壹』, 『京畿道 廣州郡』,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 1917.

법륜사의 이전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1939년 10월 3일 이후로 광주군 중부면 탄리에 위치했던 법륜사는 폐사되었다. 그리고 법륜사의 귀중품은 『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의 문서상, 경성부 지장암으로 이운되었다.⁷⁸⁾ 그런데 실제로 법륜사의 아미타불이 지장암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한 일제강점기 사료를 종합하여 법륜사 아미타불의 외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목조좌상이고, 높이는 4척 8촌이다.⁷⁹⁾ 높이를 cm로 환산하면, 길이는 145cm가량이고, 길이에 대좌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15-20cm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상 정보를 가지고 현재 서울 지장암에 소장된 목조아미타불과 비교해 동일 불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장암의 목조아미타불은 중품층생인 목조 아미타불좌상이 유일한데, 불상만의 높이가 62.5cm 밖에 되지 않는다. 법륜사의 아미타불과 두배 이상의 높이차가 나므로 별개의 불상이다. 현재 지장암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939년 법륜사가 이전되기 전부터 지장암에 봉안된 불상으로 보인다. 『법륜사 이전 허가에 관한 건』에서 법륜사 이전지인 지장암의 당시 재산 목록을 보면, 동일한 크기의 목조아미타불 명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이는 법륜사의 아미타불이 지장암으로 이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륜사 아미타불이 현재 봉국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기록상의 법륜사 아미타불이 외형상으로도 유사성이 있는지 검증하면, 일단 두 불상이 목조좌상인 점은 일치한다. 그런데 높이는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112cm이고, 법륜사 아미타불이 145cm가량으로 대좌길이 15-20cm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륜사 아미타불이 조금 더 큰 규모이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두 불상을 별개의 불상으로 결론짓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78)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79) 『봉은사본말재산대장』; 『사찰령 개정에 의한 봉은사 재산 목록』; 『조선총독부관보』 제1814호;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80)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에 첨부된 지장암의 사찰 재산대장을 보면, 아미타불의 높이는 2척, 너비는 1척 4촌이다. 높이 60cm가량의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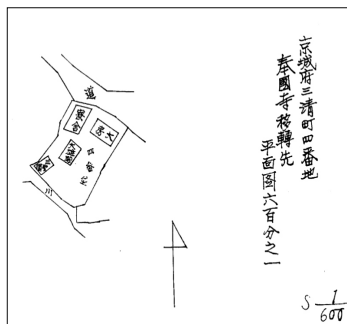
두 사찰 모두 1939년 경성부 소재 사찰로 이전되면서 광주군 소재 사찰은 변혁을 맞게 됐다. 법륜사는 완전히 폐사되고, 봉국사는 대광명전만 남은 채로 사찰의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봉국사의 대광명전이 헐리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에 불상은 계속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봉국사의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은 1939년에 이운되었고, 폐사된 법륜사 아미타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에 아미타불이 안치되었으니,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륜사와 봉국사의 거리 간격은 500m 정도라서 비교적 운반이 수월한 편이고, 사찰간 불상 내역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1939년 두 사찰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하면서 이전을 맡았던 두 사찰의 주지가 협의하여 불상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장암이 인수한 법륜사의 아미타불을 봉국사로 보내고, 대신 봉국사의 비로자나불을 지장암으로 이운하는 방식이다. 실물 사진과 함께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봉국사 · 법륜사 불상

원소장처 봉국사	원소장처 법륜사	봉국사 이전지 (연주암 포교소 현 칠보사)	법륜사 이전지(지장암)	현 봉국사
비로자나불 석가여래불	아미타불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2004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621호)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09호)

당시 봉국사의 이전지인 연주암 포교소는 큰 규모의 사찰이 아니었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전은 대웅전만 설치되었다.⁸¹⁾ 대웅전이 법전이므로, 석가불은 필요하지만, 비로자나불까지 안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찰간 불상 교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봉국사의 비로자나불이 지장암에 이운된 경위도 이로써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역사적 정



[그림5] 봉국사 이전지 평면도

황이 사실이라면 봉국사 대광명전은 법륜사의 역사까지 품은 공간이 된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불상 양식 측면에서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守衍의 작품과 유사성이 보여 1620~163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⁸²⁾ 조각승 수연은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할 때 참여한 승려라는 점에서⁸³⁾ 두 불상의 유사성에 관한 미술사적 연구가 진전된다면,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연원은 좀더 분명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5. 맺음말

봉국사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로서 성남의 불교문화와 더불어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사찰이다. 본고는 봉국사의 역사와 기능 변천을 살피고, 법전인 대광명전의 주존불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봉국사의 역사적 가치를 提高하였다. 또한, 봉국사와 관련된 문

81)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1939.

8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 경기도 유형문화재 성남 봉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3103090000&pageNo=1_1_1_0)

83) 『昆慮佛願文』

화제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봉국사는 조선 현종대에 요절한 명선·명혜공주를 추모하기 위해 현종비인 명성왕후의 명으로 창건되었다. 조선 고종대까지 왕실과 연계된 사찰로 운영되면서 조선 왕실의 문화를 담았다. 대한제국 말기에는 정토종교회설교소로 변모하는 모습에서 대한제국기 종교계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봉국사는 한국인 겪은 시련의 역사를 반영하듯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남의 독립운동가 김교상이 결성한 大韓獨立團이 활동을 전개하던 독립운동 기지였다. 1939년에 이르러 봉국사의 법통이 경성부 삼청정 소재 사찰로 이전되었지만, 봉국사의 대광명전은 보존되어 봉국사의 명맥을 이어갔다. 광복 이후 중수되어 제 이름을 찾은 봉국사는 한국사의 여러 장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다.

한편, 봉국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이 혼재되었다고 보고, 봉국사의 불상을 추적하였다. 봉국사는 창건부터 1939년 이전 시기까지 대광명전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했고, 나한전에 석가불을 안치했다.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이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인 점은 봉국사와 인근의 법륜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전되면서 두 사찰 간 불상의 봉안처가 혼재됐다고 보았다. 또한 봉국사가 창건 시기에 봉안한 불상인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각각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두 불상이 법륜사에서 이운했다는 종래의 학설을 수정하였다.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의 주존불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법륜사에서 이운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봉국사의 역사적 의미를 중층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고, 봉국사와 관련된 문화재의 연원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1차 문헌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梵宇攷』
- 『大覺登階集』
- 『奉恩寺末寺誌』
- 『淸臺日記』
- 『璫源譜略修正儀軌』
- 『昆慮佛願文』
- 『旅庵全書』
- 『寺刹考』
- 『朝鮮總督府官報』
- 『土地調査簿』
- 『望京庵七星臺重修碑』
- 『동아일보』
- 『七寶寺沿革』
- 『寺刹移轉許可申請ノ件』
- 『嶺岩寺移轉許可願ノ件』
- 『寺院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 『寺刹令改正ニ依ル奉恩寺財産目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view.do?pseq=4087&aseq=326>
- 『大正五年度 遺物遺跡調査報告書 題壺』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view.do?pseq=3116&aseq=160>
-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jssy_003_0300
- 『法輪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59360&dsid=0000000010&gubun=search>
- 『奉國寺移轉許可願ニ關スル件』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59360&dsid=0000000011&gubun=search>
- 『說敎所設立認可申請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59110&dsid=00000000127&gubun=search>
- 『金敎爽 李載仁 姜學熙 판결문』 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openViewer.do>

2. 단행본

- 京畿道, 『(2006年度)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 李恒老 生家·奉國寺 大光明殿』, 경기도, 2007.
- 문명대 외, 『지장암: 지장암의 역사와 문화』, 한국미술사연구소·지장암, 2010.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청, 2009.
- 문화재청,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청, 2018.
- 상공부 중앙계량국, 『계량단위 환산표』, 1964.
-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성남시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1.

3. 논문

- 김엘리, 『19세기 말 고종대 이규승의 망경암 중수에 관한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22-2, 역사문화학회, 2017.
- _____, 『성남시 폐사찰 法輪寺에 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78,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1.
-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43, 한국불교미술학회, 2014.
- 박성래, 『한국 도량형사』, 『한국의 도량형』, 국립민속박물관, 1997.
- 송은석, 『1622년 지수사·인수사의 장렬왕후 발원불사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石堂論叢』67, 석당학술원, 2017.
- 염중섭, 『靈山會上圖에 관한 상징과 의미 분석』, 『불교학연구』27, 불교학연구회, 2010.
- 오경후, 『朝鮮後期 佛教政策과 對應論 : 白谷 處能의 <諫廢釋教疏>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31, 역사민속학회, 2009.
- 윤기엽, 『개화기 일본불교의 포교 양상과 추이』,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54,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 윤종준, 『明善·明惠公主에 대한 고찰』, 『城南文化研究』17, 2010.
- 이중봉, 『韓末 度量衡制의 개혁과 성격』, 『石堂論叢』64호, 석당학술원, 2016.
- 한동민, 『대한제국기 일본 淨土宗의 침투와 불교계의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3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A Study on the History of Bongguksa Temple in Seongnam-si and the main Buddha of Daegwangmyeongjeon Hall

Kim, Ellie*

This study, we looked at the history of Bongguksa Temple, a traditional temple in Seongnam-si, and examined the main Buddha of Daegwangmyeongjeon Hall.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history and function of Bongguksa Temple,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changes in the Buddhist culture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the religious world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to find out that Bongguksa Temple was used as a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Corps' formed by Kim Kyo-sang in Japanese colonial era.

Tracking down the main Buddha of Bongguksa Temple's Daegwangmyeongjeon Hall, it was revealed that Vairocana Buddha was enshrined in Daegwangmyeongjeon Hall when Bongguksa Temple was founded, and Sakyamuni Buddha was enshrined in Nahanjeon Hall. The two Buddha statues of Bongguksa Temple exist as Seated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s of Jijangam Hermitage in Seoul and Wooden Seated Buddha statues of Chilbosa Temple in Seoul. It is believed that the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the main Buddha of the Daegwangmyeongjeon Hall of Bongguksa Temple, was moved to the Daegwangmyeongjeon Hall of Bongguksa Temple when Bongguksa Temple was relocated in 1939.

* Chung-Ang University, Da 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 Professor in charge of lectures

Key words : Bongguksa Temple, Daegwangmyeongjeon Hall, Seated Wooden Amitabha Buddha at Bongguksa Temple in Seongnam, Seongnam
Bongguksa Temple, Amitabha Hoebuldo, Kim Kyo-sang